

『구미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선우 의원 외 4명

2. 제안이유

- 어린이 놀이기구의 시설 점검·개선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고 실제 사용자의 의견을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(안 제5조)
- 안전의무 이행에 대한 사항(안 제6조)
- 안전감시망 구축에 대한 사항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」 제2조의2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불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2. 01. 04. ~ 01. 11.) 결과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어린이놀이기구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최근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, 놀이기구의 안전 점검 과정과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 실제 사용자인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기구를 즐기며 올바른 정서 함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